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4 ~	30
----------	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	2014. 4. 30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거창군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진입제한을 완화,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규정을 구체화함(안 제6조후단)
 -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
- 나.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, 제3조, 제7조)
 - 「관광진흥법」제50조제1항 및 제3항, 제52조제1항
 - ⇒ 「관광진흥법」제52조제1항 및 제4항, 제54조제1항
 - \bigcirc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5호 \Rightarrow 제3조제16호
 - 매년 실시하는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부담을 완화함
 - 다.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함
 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 - 규정에 의하여(의한) ⇒ 에 따라(따른)
 - 라.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함(안 별표)
 - 마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(안 별지 제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○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
- ○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6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의견반영(과태료 부과기준 완화)
 -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
 - 당초 : 1차 50, 2차 100, 3차 200만원
 - 수정 : 1차 40, 2차 80, 3차 120만원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4. 4. 10. ~ 4. 30.
 - (나) 예고방법 : 의견없음
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공중화장실등"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·유료화장실을 말한다.

제3조 본문 중 "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의 1"을 "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기타 다중이"를 "그 밖에 많은 사람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「관광진흥법」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
- 2. 법 제3조제16호 및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

제4조 중 "공중화장실 등"을 "공중화장실등"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6조제2항 중 "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에 따라"로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

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제1항 중 "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6조에 따라"로 "연간"을 "3년마다 1회이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"을 "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12조제1항, 제15조제2항제4호, 제17조제1호·제2호, 제18조 본문 중 "의 규정에 의한"을 "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3조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, 제16조제2항, 제17조제1호·제2호 중 "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에 따라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, 제16조제1항 본문, 제17조 본문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한다.

제17조제4호 중 "기타"를 "그 밖의"로 한다.

제18조 중 "별표 1"을 "별표"로 한다.

별표 1을 별표로 하고, 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같은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	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공중화장실등"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(이하 "공중화장실 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	등"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<u>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.	<u>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하나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・승인된	제10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
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 2. 법 제3조제15호규정 및 영 제3조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 및 시설 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3.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	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
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	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 <u>후단 신설></u>	
② 제1항 <mark>의 규정에 의하여</mark>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 안</u> 에서 유지·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	②에 따라
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(이하 "관리인"이라 한다)에 대한	3년 마다 1회이상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관리대장의 비치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<u>별지 제1호 서식</u>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·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 을 기록하여야 한다.	<u>별지 제1호서식에</u> 따른
제11조(화장실의 개방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개방할 수 있다.	② <u>제1항에 따라</u>
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군수는 법 제9조 <u>의 규정에 의한</u>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	에 따른
제13조(편의·위생용품의 지원)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·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<u>범위 안</u> 에서 편의·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	
① 제14조 <u>의 규정에 의하여</u>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1. ~4. (생 략)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	<u>각 호</u>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<u>각 호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유료화장실의 신고)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<u>각호</u>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설전반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.	<u>각 호</u>
제17조(준수사항) 제16조 <u>의 규정에 의하여</u>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<u>각호</u>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제8조 <u>의 규정에 의한</u> 편의용품을 비치·제공하여야 한다. 2. 제16조 <u>의 규정에 의한</u> 사용료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	 - <u>각 호</u> 에 따른 1에 따른 2에 따른
지원을 조과하여 성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3.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. 4. <u>기타</u> 화장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. 제1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군수는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때에는 <u>별표 1</u>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.	3 4. <u>그 밖의</u> 제1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에 따른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.
- 나.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,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 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.
- 다. 위반행위 <u>횟수는 해당</u>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		부 과 금 액				
위 반 사 항	 근거조항		액			
11 2 1 0	L/10	1차	2차	3차		
1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	법 제21조제1항	<u>40</u>	<u>80</u>	120		
2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	법 제21조 <u>제2항</u> 1호					
가.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		20	40	60		
나. <u>법</u>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		10	20	30		
3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준을 위반한 <u>경우</u>	법 제21조 <u>제2항</u> 2호					
가. <u>법</u>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		10	20	30		
나. <u>법</u> 제11조제4항 설치·관리기준 위반		20	30	40		
<u>4.</u> 개선명령 <u>등을</u> 이행하지 아니한 <u>경우</u>	법 제21조 제2항 3호	20	40	60		
가. <u>법</u> 제7조, <u>제7조의2</u> 의 설치기준을 위반		20	40	60		
나. <u>법</u>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		10	20	30		
<u>5.</u>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<u>경우</u>	법 제21조 <u>제2항</u> 4호	10	20	30		
<u>6.</u>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<u>경우</u>	법 제21조 제3항	5	10	20		

※ 비고: "법"이란 "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을 말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유료화장실 □ 신고서						처리기간						
□ 변경신고서						3일						
신	상 호(명칭)											
청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							
인	주 소											
시	소 재 지	관리주체										
설 현	관 리 인		(전화번호 :) 설치 <u>연도</u>			토						
황	구 모	부 지 : m², 화장실 면적 : m²										
		대변기 수		소변기 수			대변기 유형		<u>i</u>			
시 설 내 ⁹ 설	시 설 내 역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이	용	동양식		서양식		
내		세면기 에어E (페이퍼		타올	환풍기	화징	화장지		비누		방향제	
역	편 의 시 설	세면기	(페이프	타올)	10/1	유	무	유	무	유	무	
1회 사용료 원												
<u>「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」</u> 제16조제1항 <u>에 따라</u> 유료화장실을												
신고합니다.												
신고인 : (날인 또는 서명)												
기키구												
거 창 군 수 귀하												
구비서류 1. 화장실 내부 평면도							수수	료				
이 되기가 되지 마 스시네된다						없	음					
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							ц					